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2. 22 선고 2021가단574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5.

판 결 선 고 2022. 2. 22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10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. 11. 6. 접수 제130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박영순

[별지1]

목 록

1. 대구 달성군 D 답 793㎡
 2. 대구 달성군 E 전 311㎡
 3. 대구 달성군 F 답 136평
 4. 대구 달성군 G 답 1,359㎡
 5. 대구 달성군 H 답 446평
 6. 대구 달성군 I 답 621㎡
- 끝.

[별지2]

청 구 원 인

1.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

가. C와 피고는 부자지간입니다.

나. 원고는 1998. 2. 20.경 피고의 부친인 C와 사이에 C가 실제 점유하면서 소유하던 대구 달성군 D 답 1,03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합니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 10,000,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그 무렵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.

다.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2021. 2. 18.자로 일본인(J)의 소유라는 이유로 국가가 권리귀속(1984. 9. 11.자)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넘겨 받았습니다.

라. 따라서 원고가 C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C에게 교부한 매매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셈이 되었습니다.

마. 그렇다면, C는 원고에게 1,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2. 사해행위 등

가. C는 원래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합니다)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20. 10. 2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나. 한편, 위 등기가 경료될 무렵 원고는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위 등기가 경료될 당시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.

다.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행위는 자신이 무자력에 빠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,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악으로 수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